#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| 제출일자 : 년 월 일<br>제 출 자 : 성 주 군 수 |
|---|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서 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～제2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전략담당관-4194(2021.12.15.)]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52256(2021.12.14.)]

마.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생략

성주군 조례 제 호

**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**

**제1조(「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"으로 한다.

**제2조(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"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**제3조(「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32조제6항"으로 한다.

**제4조(「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1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2항 및 제27조"로 한다.

**제5조(「성주군 사무위임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"로 한다.

**제6조(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"로 한다.

**제7조(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부터 제134조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”로 한다.

**제8조(「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”로 한다.

**제9조(「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**제10조(「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”로 한다.

**제11조(「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**제12조(「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**제13조(「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”로 한다.

**제14조(「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”

로 한다.

**제15조(「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"으로 한다.

**제16조(「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3항"으로 한다.

**제17조(「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"로 한다.

**제18조(「성주군 수도급수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같은법 제139조제1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같은법 제156조제1항"으로 한다.

**제19조(「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"로 한다.

**제20조(「성주군 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"으로 한다.

**제21조(「성주군 이장 정수조례」의 개정)**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제1조「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4조(재정안정화계획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 략)<br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, 경상적세외수입, 보통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일반조정교부금(이하 "경상일반재원"이라 한다) 세입액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| 제4조(재정안정화계획의 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br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---------- |

### 제2조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 ----------. |
| 제7조(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)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 이 경 | 제7조(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) ④ <삭 제> |

| | |
|---|---|
| 우 비용추계서는 성주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. | |

**제3조「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7조(공포방법) ①자치법규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·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.<br>②(생 략) | 제7조(공포방법) ①<br>----------<br>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32조제6항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<br>②(현행과 같음) |

**제4조「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5조(권리와 의무부담)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. | 제5조(권리와 의무부담)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. |

**제5조「성주군 사무위임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 | 제1조(목적) 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 |

| | |
|---|---|
|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|

**제6조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 1 1 7 조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. |

**제7조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 | 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부터 제134조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----------. |
| 제6조(설치) ①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와「지역보건법」제7조·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·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,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. | 제6조(설치) ①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6조 ----------. |
| ②·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
**제8조「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9조 ----------. |

**제9조「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 | 제1조(목적) -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|

| | |
|---|---|
| 관리 기본법」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「성주군 인재육성 기금」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|

**제10조「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. |

**제11조「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설립기관범위) ①(생 략)<br><br>1.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| 제2조(설립기관범위) ①(현행과 같음)<br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|

| | |
|---|---|
| 설립하는 경우<br>2 · 3 (생 략) | 2 · 3 (생 략) |
| ② · ③ (생 략) |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|

**제12조「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40조(위탁관리) ① 군수는 시장·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. | 제40조(위탁관리) ①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.. |
| ② · ③ (생 략) |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|

**제13조「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4조(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)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| 제24조(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)<br>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<br>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 . |

**제14조「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별고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주군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,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 . |

**제15조「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(이하 “대지보상특 | 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<br>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<br>----------<br>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| ----------. |

**제16조「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2항 ----------. |
| 제3조(과태료) ① (생 략)<br>1·2·3·4 (생 략)<br>② (생 략)<br>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·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제3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br>1·2·3·4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3항----------. |

**제17조「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 | 제1조 (목적) -----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의 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가의 농업경영개선,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 |

**제18조「성주군 수도급수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에 따라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 1 조 ( 목 적 ) 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같은법 제156조제1항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|

**제19조「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1조(권한의 위임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·장에게 위임한다. | 제21조(권한의 위임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---------- ---------- ----. |

| | |
|---|---|
| 1·2 (생 략) | 1·2 (현행과 같음) |

**제20조「성주군 반 설치 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 ----------. |

**제21조「성주군 이장 정수조례」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·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,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7 조 ----------. |

#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가. 재정수반요인

해당 없음

## 나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## 다. 미첨부 사유

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## 라. 작성자

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백 두 현